

의회 개방성 선언문

요약

목적

의회 개방성 선언문¹은 각국의 의회, 지역구 및 다국적 입법기관들에게 개방성을 지향하고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의회모니터링조직(PMO: Parliamentary monitoring organization)들이 제안하는 것이다. PMO들은 시민들의 의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의회활동 역량을 강화시키며, 의회의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점차 알려지고 있다. PMO들은 정부와 의회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의회 개혁에 대한 각국 의회들의 범국가적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선언문의 목적은 시민들의 의회 참여를 촉구할 뿐 아니라, 의회와 PMO 간의 소통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나아가 더 많은 시민 참여, 더 책임감 있는 대표기관을 장려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

국제 의회 커뮤니티의 다양한 참고문헌을 고려한 본 선언문은, 미국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썬라이트재단(Sunlight Foundation), 라틴아메리카 입법투명성네트워크(Latin American Legislative Transparency Network)에 의해 공동주관된 PMO 협의회에서 처음 거론되었다. 이 협의회는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2일부터 진행되었고, 오미디아르 네트워크(Omidyar Network), 열린사회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세계은행 연수원(World Bank Institute), 미국의 멕시코 대사관이 지원하였다. 이후 선언문은 프랑스의 시민단체 시민의 시선(Regards Citoyens),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의 유럽연구센터(Centre d'études européennes)와 미디어랩(Médialab)이 주관하고 2012년 7월 6일에서 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오픈입법데이터회의(Open Legislative Data Conference)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초안은 대중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2012년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OpeningParliament.org에 공개된 선언문의 최종안은 국제 민주주의의 날인 2012년 9월 15일에 로마에서 열린 세계전자의회 회의(World e-Parliament Conference)에서 발표되었다.

범위

개방성 문화 확산하기: 의회정보는 공공의 것이다. 의회정보는 법에 의해 엄밀하게 정의된 일부 제약사항을 제외하고는 시민에 의해 재사용되고 재배포될 수 있어야 한다. 의회 개방성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는 모든 시민의 참여 및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¹ 선언서에 대한 좋은 사례가 기록되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문서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www.openingparliament.org/declaration>.

효과적인 의회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며, 감시를 통해 이러한 권리들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 의회는 또한 시민들이 의회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의회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의 기능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좋은 사례를 다른 의회와 공유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의회는 PMO 및 시민들과 협업하여 모든 의회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의회정보 투명하게 하기: 의회는 의회정보를 순조롭게 개방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그 정책들을 검토하여 좋은 사례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의회정보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와, 의안 및 개정안 문서, 투표 결과, 의회 안건 및 일정,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록, 과거자료, 의회를 위해 또는 의회가 생성한 보고서와 같이 의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 등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를 일컫는다. 의회는 의회의 관리와 행정, 임직원, 그리고 의회의 예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의회는 시민들이 의원의 청렴도, 성실도, 이해의 잠재적 불일치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원들의 배경, 활동 및 사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회정보에 대한 접근 쉽게 하기: 의회는 참관, 출판물, 라디오, 실시간 방송과 VOD, 스트리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정보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의회에 대한 물리적 접근 역시 공간과 안전보장의 범위 내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미디어 및 참관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공개정책들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의회정보는 또한 다국어 및 통용어로 무료제공되고, 쉽게 쓰여진 요약문 등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정보의 전자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의회정보는 개방되고 구조적인 형태로 온라인에 배포되어 시민들이 기술적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정보는 그것을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연결되고, 쉽게 검색되고, 전체가 한꺼번에 다운로드 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개통이 부족한 사회에서도 의회 웹사이트는 중재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확산시켜, 시민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의회 웹사이트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랙티브(interactive) 도구를 활용하고, 알림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의회는 비상업적 파일 형태(non-proprietary formats)와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의회는 의회정보의 기술적 사용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그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privacy)도 보장해야 한다.

의회 개방성 선언문

서문

포괄성, 신뢰성, 접근성, 책임감 있는 의회와 입법기관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시민을 대표하고, 정책 집행 및 성과를 감독하고,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헌법적 책임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역할하는 가운데;

의회 개방성으로 시민들이 의회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이해를 잘 대변하도록 하는 가운데;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framework)², 민주 의회를 위한 국제의회커뮤니티³들의 국제적 벤치마크 및 표준에 시민들의 국정 참여 및 공공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제정되고, 국제 기구들이 온라인 개방성에 대한 강한 근거를 마련⁴ 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의회정보의 공공성과 좋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발전하는 기술이 분석과 의회정보의 재사용성을 통해 공유 지식의 축적과 정보성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여는 가운데;

의회가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각종 전통, 경험, 자원, 상황이 영향을 주는 한편, 그것이 의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중요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가운데;

더 폭넓은 정부 개방성이 의회 개방성을 보완하고, 많은 정부 기관이 모니터링 허용을 약속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등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투명성, 효과성, 책임감을 제고하는 가운데;

점점 많은 시민사회의 의회 모니터링 및 지원 조직들이 의회의 민주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의회정보가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접근을 요청하며, 의회정보의 폭넓은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와 의회 모니터링 조직(PMO)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사례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PMO 커뮤니티⁵들이 다음과 같은 의회 개방성 원칙을 정하고 준수하기로 서약했다.

²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19, 21조 및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19, 25조 포함.

³ 이 규정 및 벤치마크들은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연방의회협회(CPA: Commonwealth Parliamentary Association),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의원포럼(SADC Parliamentary Forum: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Parliamentary Forum), 의회 회의기구(Assemblée parlementaire de la Francophonie), Parliamentary Confederation of the Americas 등에 의해 생성되고 적용된 문서들을 포함한다.

⁴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과 UN 경제사회처(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의회 웹사이트를 위한 권고안, 2009년 3월.

개방성 문화 확산시키기

1. 의회정보의 공공 소유권 인지하기

의회 정보는 공공의 것이다. 시민들은 의회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재사용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제약사항은 법에 의해 엄밀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2. 입법을 통해 개방성 문화 발전시키기

의회는 법률을 제정할 의무 뿐 아니라, 공개정부 문화를 촉진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과 시민사회가 입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중이 정부와 의회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절차에 대한 내부 규칙과 행동 원칙을 제정할 의무를 가진다.

3. 감시를 통해 개방성 문화 보호하기

의회는 감시 기능을 통해, 정부 개방성에 관한 법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하여 정부가 완전히 투명하고 개방적인 문화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4. 시민 교육 활성화하기

의회는 입법과정과 규칙, 의회의 업무, 의회 및 의원의 역할에 대해 대중, 특히 청년에게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

5.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 촉구하기

의회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에 탄원할 권리를 가지도록, 그들이 평등하게 의정 절차와 결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6. 시민사회의 독립성 보호하기

의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7. 의회 모니터링의 실효성 높이기

의회는 시민사회와 언론, 일반 대중이 가지는, 의회와 국회의원을 감시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의회는 일반 대중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의회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그들이 국회 정보에 접근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의회를 감시하는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

⁵ 선언문에 기여하거나 보탬이 된 PMO들의 완전한 목록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openingparliament.org/organizations>.

8. 좋은 사례 공유하기

의회는 의회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키며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이고 국지적으로 타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우수 사례를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

9. 법률 청구권 보호하기

의회는 의회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키며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이고 국지적으로 타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우수 사례를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

10. 모든 정보 확산시키기

의회가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는 의회의 활동을 온전히 반영하여 최대한 완전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한다.

11. 실시간 정보 제공하기

의회정보는 적시에 대중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정보가 내부적으로 준비되자마자 대중에게도 제공하도록 한다.

12. 정확한 정보 보하기

의회는 모든 절차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대중에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해야 한다.

의회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13. 의회 투명성에 관한 정책 시행하기

의회는 의회정보가 순조롭게 확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포맷을 정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의회 투명성 정책과 조항들은 기술 발전과 좋은 사례들이 정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에 공개되어야 한다. 의회가 의회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의회정보가 더 널리 확산되도록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개발해야 한다.

14.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의회는 입법과정에서 의회와 위원회들의 역할, 구조, 기능, 내부 규칙,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5. 의원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의회는 의원들의 정당 소속, 권한, 의회에서의 역할, 출석률, 개인 비서진(staff) 등, 의원들이 스스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고 싶어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의회 및 의원 사무소들의 유효한 연락처들도 역시 공개해야한다.

16. 의회 임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의회는 스스로의 행정 기능과 입법과정을 관할하는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직원들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

17. 의사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회의, 투표, 절차, 위원회 회의 등 의사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급하게 입법해야 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과 시민사회가 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18. 시민들이 입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의안 초안은 제안될 때부터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fully informed) 의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 토론과 의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사전 분석과 배경 설명을 제공해야한다.

19. 위원회 의사록 공개하기

위원회 의사록을 비롯하여 생성되거나 수집된 문서들, 공개 청문회에서의 증언들, 속기록, 위원회 활동 기록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20. 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기록하기

의원들의 선거구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는 본회의에서 발성투표(voice voting)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호명투표(roll call) 또는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를 사용해야하며,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각 의원의 투표 결과를 보존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한다. 유사하게, 의회는 대리투표(proxy voting)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21. 본회의 의사록 공개하기

의회는 오디오나 비디오 등의 형태로 본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손쉽게 접근 가능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록물은 온라인으로 고정적인 위치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기록문(written transcript)이나 의사록 형태로도 제공이 되어야 한다.

22. 의회가, 혹은 의회에게 제공되는 보고서 공개하기

의회에 의해 작성되거나 요청되거나 의회, 사무소, 위원회로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보고서는 법률로 제한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23. 예산과 지출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의회는 국가 예산 및 공공 지출의 과거, 현재,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완전하고 상세하고 쉽게 이해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의회는 스스로의 예산, 즉 예산 집행, 입찰, 계약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 정보는 일관된 분류 체계하에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 요약문, 설명문 또는 보고서 등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4. 재산을 공개하고 의원들의 청렴도 보장하기

의회는 각 의원의 청렴도와 성실도에 대해 시민들이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재산, 의회 지출내역과 이자, 배당금, 임대료, 현물 등 비의회 수입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5. 비윤리적 행위와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정보 노출하기

의회는 의원이 로비스트나 압력단체와 상호작용하는 정보를 비롯하여 실질적 또는 인지적 이해충돌과 윤리적 침해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의회는 또한 비윤리적 행동, 이해갈등, 또는 부패에 대한 재판이나 의회 조사의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6. 과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이전 임기에 대한 의회정보는 전산화되어 시민들에게 법적 제약이나 비용없이 영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의회가 스스로 정보를 전산화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면, 외부의 조직들과 협력하여 의회정보를 제한없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 도서관에 공공 접근을 허용하여 의원들과 대중이 의회의 과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회 정보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27.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제공하기

의회는 직접 참관 및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모바일 기술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8. 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의회와 본회의는 공공 안전과 공간 제약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에서 모든 시민들의 물리적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29. 미디어의 접근 허용하기

의회는 미디어와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의회 의사록의 모든 내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접근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30. 실시간 스트리밍 및 VOD 제공하기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실시간 스트리밍 및 VOD로 시민들이 의회 회의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31. 전국적 접근성 높이기

의회에 대한 정보는 지리적 장벽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의회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지리적 제한 없이 의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접근과 사용이 제한되는 국가에서 의회는 대중이 의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32. 쉬운 용어 사용하기

의회는 시민들이 의회정보에 접근하는데 법률적 혹은 기술적 용어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률을 작성하는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지라도, 의회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과 시민들에게도 이해가 잘 되는 쉽게 쓰인 요약문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33. 다국어 또는 통용어 사용하기

헌법이나 의회의 법규가 다수의 국가에서, 또는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는 경우, 의회는 법적 절차에 대한 동시통역과 의회 기록에 대한 빠른 번역을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34. 무료 접근 허용하기

의회정보는 시민들이 무료로 무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재사용,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정보에 기계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35. 오픈되고, 구조적인 형태로 정보 제공하기

의회정보는 시민, 시민 사회, 민간 그리고 정부가 쉽게 재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XML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읽히고 처리될 수 있는 공개되고 구조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6. 기술적 사용성 보장하기

의회는 의회 웹사이트에서 의회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도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의회정보의 기술적 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의회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사례들을 활용해야 한다.

37.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의회 웹사이트는 시민들이 그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간결하고 명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 웹사이트의 정보에 누구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회원가입이나 등록 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식별정보를 추적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38. 비상업적 파일형태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의회는 디지털 정보를 출판할 때 비상업적, 오픈 파일 형태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9. 재사용을 위한 다운로드 허용

의회정보는 쉽게 다운로드 가능해야 한다. 정보의 쉬운 재사용을 위해 통째로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하며, 문서화가 잘 된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40. 의회 웹사이트 유지보수하기

현대의 상호연결된 세상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의회 웹사이트를 꾸준한 유지보수하는 것이 의회 공개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의회는 의회정보가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될 것을 보장하고, 온라인 확산을 핵심적인 소통의 도구로 고려해야 한다.

41. 쉽고 안정적인 검색 메커니즘 사용하기

의회는 적절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하고 복잡한 검색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정보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는

persistent URL(역자주: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 웹 주소) 등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42. 유사한 정보 링크하기

의회는 의회정보를 다른 관련된 정보와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관련 의회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야한다. 예를 들면, 의안의 이전 버전들과 링크함으로써 해당 의안의 역사를 보거나, 관련 의회 보고서, 전문가 진술, 대안 의안, 해당 의안에 대한 회의록 등을 연결할 수 있다.

43. 알림 서비스 사용하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의회 활동의 특정 부분들에 대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44. 양방향으로 소통하기

의회는 쌍방 소통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입법 및 의회 활동에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의원 또는 의회 간부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야한다.